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1. 계약조항

물품공급 계약서	
제2조[상호간 업무 및 의무]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및 의무	
가. 공급 제품에 대한 품질, 공급가격이나 재고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나. 제품 홍보와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학회지원 및 브로셔 제공	
다. "갑"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2. "을"의 업무 및 의무("을"이 공급한 대리점이나 거래처 포함)	
가. 공급제품에 대한 거래선 개척, 광고, 홍보 담당	
나. "갑"의 공지사항 등 영업정책 준수	
다. "갑"의 공급 제품에 대하여 "을"은 해당 지역 내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3. 판매지역 및 거래처	
가. 판매지역 및 거래처는 양자 간에 합의한 지역 또는 거래처에 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나. "갑"과 "을"이 합의한 지역 및 거래처의 표시는 별도의 계약서에 규정한다.	
제6조[독점권 상실]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독점권이 상실되며, 양자 협의하여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의 영업정책을 위반하여 "갑"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독점권은 상실된다.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약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약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